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90
----------	-------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 의 자 : 박수영 · 하태경 · 정찬민
박정하 · 김성원 · 정동만
전봉민 · 서병수 · 유상범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였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국무총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

1.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2.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국무총리는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u> <u>1.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u> <u>2. 보험사기 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u>
<u><신 설></u>	<u>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u>

한다.